오산시의회 공고 제2021-19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영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·드론·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, 사진 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 하고 사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지역의 사진문화 및 사진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나.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마.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규정함(안 제7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1년 8월 31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: 031)8036-8023, ·팩 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	례	명	: 오산	시 사진	산업	육성	및	지원에	관한	조례안
□ 의건	<u></u> 년제출	자								
\bigcirc ?	성명(단	난체	명) :							
\bigcirc 2	<u> </u>		소 :							
ं र	전 화	번	호 :							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	견	비고
— II C II O	찬성	반대	1		

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영희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제8-571호 발의년월일 : 2021년 8월 24일

발의의원:김영희의원

찬 성 의 원 : 장인수, 김명철, 이상복,

성길용,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○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·드론·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, 사진 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 하고 사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.

○ 이에 지역의 사진문화 및 사진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마.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규정함(안 제7조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5호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3조, 제14조
 - 「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」 제5조

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사진 산업"이란 사진의 창작·전시·교육, 사진 상품의 제작·개발·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) 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하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영환경,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「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조례」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5조(사업)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사진문화 진흥 사업
 - 2.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
 - 3.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

사업

- 제6조(사진 산업 지원) 시장은 사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·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.
- 제7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5.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 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・등록・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- 2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 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 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 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문화산업의 육성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 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,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 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「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」
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 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평 가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(財源)에 관한 사항
 - 4.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
 - 5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 - 6.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7.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